

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5513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C에 대한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9. 6. 접수 제12438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9. 6. 접수 제12438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B에 대한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3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3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1) 원고는 2009. 8. 13.부터 2016. 7. 5.까지 D에게 합계 363,652,700원을 대여하였다.
- (2) D은, ① 피고 C에게 본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9. 6. 접수 제12438호로 2016. 9. 2.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 9,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3939호로 2018. 3.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3) D은 2018. 8. 22. 13:50 파산선고를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30).
- (4) 원고는 2018. 11.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6050,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019. 9. 20. 관련 사건 소가 D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나63651),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86324), 2020. 12. 24. 상고를 취하하였다.

(5) D에 대하여 관련 사건 항소심 진행 중 파산절차 폐지 결정이 있었다.

(6) D은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 사건 저당권은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D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D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피고 B은 D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청구의 당부가 관련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소가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며, ③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고, D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소금지원칙 위배 여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하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소를 취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판력 저촉 여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관련 사건 제1심에서 관련 사건 소가 D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이 사건 소는 D에 대한 파산절차가 폐지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1. 12. 관련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2. 22.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이 D에 대한 파산선고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항변은 판단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가 D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각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여부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8. 5. 6. 원고에게 'D이 채무가 많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D의 소유이고 D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인쇄된 채무이행확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6. 9. 2. D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채권액과 같은 금액인 9,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D이 2019. 2. 18. 피고 C에게 위 채무이행확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피고 C이 2016. 9. 2. D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D이 2016. 9. 4.부터 2018. 3. 14.까지 피고 C에게 합계 1억 3,32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9,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억 3,320만 원 중에는 D이 2018. 3. 14. 피고 C에게 송금한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피고 B이 피고 C의 채권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매매와 같이 보이기 위하여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이를 그대로 피고 C에게 반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3. 14.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D이 같은 날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관련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3. 21. D과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이 2019. 3. 21. 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D이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부녀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억 3,320만 원 중 D이 2018. 3. 14. 피고 C에게 송금한 위 6,000만 원은 차용금의 변제로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만 원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관련 사건에서 ‘피고 C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면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과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 B이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D과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남 영광군 E, F, G, H, I, J에 있는 K빌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상가 및 사무실

1층 1231.629㎡

2층 1092.085㎡

3층 1074.685㎡

지하층 28.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남 영광군 E 대 217㎡

2. 전남 영광군 F 대 1125㎡

3. 전남 영광군 G 대 161㎡

4. 전남 영광군 H 대 222㎡

5. 전남 영광군 I 대 223㎡

6. 전남 영광군 J 대 26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L호

철근콘크리트조 6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212분의 42.669

2, 3, 4, 5, 6 소유권대지권 2212분의 42.669. 끝.